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  
상대가치기획센터 국장 김기성(6574) / 팀장 김선우(6576) / 담당 이연주(6560) / email: duswn974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9699호

시행일자 2017. 12. 18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4호(2017.12.14.) "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"관련입니다.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19호, 2017.12.1)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합니다.

- 주요 내용 -

가. 검체, 병리 검사 행위분류 개편에 따른 각 항목별 세부내용 신설  
나. 시행일 : 2018.1.1부터

붙임 : 1. 개정고시 1부.  
2. 일부개정안(별표1,2)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